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- 회부일자 : 2010년 4월 7일

3. 제안이유

- 법령상호간에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, 도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,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(제10조 삭제)
- 일본식 한자 표기인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정비,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 임기”로 정비 등(안 제2조, 제4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법령상호간에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, 도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,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